

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“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”의 구성원 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역할을 대행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제 신설(안 제3조제1항) 및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 추가(안 제3조제1항1호)
- 나.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설(안 제7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. 9. 25. ~ 20. 10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(미반영)

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

제5조제2항 중 “부군수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에 “부군수가 되고”를 “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<u>위원장 1명</u>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<u>위원장은 군수가 되고</u>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<u>군수가 임명</u>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<u>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(부군수)</u></p> <p>2. 9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----- --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-----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가 되며----- -----.</p> <p>1. <u>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</u></p> <p>2.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부군수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부위원장이</u>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수가 되고</u>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임·직원중에서 당해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</u> <u>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[붙임]

관계법령 발췌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1조(지역위원회)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3. 8. 6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>

1.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
 2.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 3.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
 4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 5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 6.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- ③ 시·도위원회와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,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>
- ④ 삭제 <2013. 8. 6.>
-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[붙임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거 비용 추계서 작성제외 대상임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
연락처	(033) 330 - 2019